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최근 데이터 3법 개정(‘20.2.4. 공포, ‘20.8.5. 시행), 디지털 뉴딜 추진(‘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하지만,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 데이터 컨트롤타워 부재와 분절적 대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 시너지 및 성과 창출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협업과 민관협력을 위한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여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 추가(안 제2조)

국가데이터전략 수립, 데이터 관련 정책·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데이터 관련 민간부문 의견·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및 민관 협력, 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나.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안 제3조, 제6조)

- 1) 민간위원장 단독 체제를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인사) 체제로 확대함.
- 2) 국무총리 위원장의 직무대행 주체를 민간위원장으로 명시함.

다. 당연직 부처 및 위원 수 확대(안 제3조)

- 1)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

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함(5개→12개).

2) 위원회 위원 수 규모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

라. 데이터 특별위원회 신설 및 특별위원회 명칭 명문화(안 제8조)

1)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함.

2) 데이터 특별위원회와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명문화함.

마. 혁신위원회 명칭 변경(→분과위원회)(안 제8조, 제12조, 제14조)

전체회의 분야별 사전심의 기구로서의 기능, 역할에 초점을 맞춰 혁신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개정안,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공 및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데이터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5. 데이터 생산·구축·공유·연계·개방·유통·결합·활용 관련 각 부처별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 관련 민간부문의 의견·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따른 개선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하여 30명”을 “2명을 포함한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국무총리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를 “국무총리인 위원장이”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제3조제2

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혁신위원회 ·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분과위원회 ·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혁신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데이터 특별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혁신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혁신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설></u>	<u>14. 공공 및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데이터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5. 데이터 생산·구축·공유·연계·개방·유통·결합·활용 관련 각 부처별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6. 데이터 관련 민간부문의 의견·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따른 개선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7. 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u>
<u>14. (생략)</u>	<u>18. (현행 제14호와 같음)</u>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2명을 포함한 40명</u> ----- ----- -----.

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3. (생략)

④ (생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혁신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

-----.

③ -----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
-----.

②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장---

제8조(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① -----

----- 분과위원회 -----
-----.

②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혁신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혁신위원회·특별위원회·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데이터 특별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및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 분과위원회-----

-----.

제14조(운영세칙) -----
-----분과위원회-----

-----.